

#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 내부통제기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정책/내규, 가이드라인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하고, 내부통제기준과 위 기본적인 절차, 정책/내규, 가이드라인 등을 총칭하여 "내부정책"이라 한다)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대내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법령 또는 감독규정이 내부정책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또는 감독규정이 우선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통제절차'라 함은 모든 임직원이 관계법령, 감독규정 또는 내부정책을 준수하기 위하여 따라야 하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
2. '내부통제감시'라 함은 업무에 있어 관계법령, 감독규정 또는 내부정책의 위반여부를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준법감시인'이라 함은 내부정책이 적절히 준수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관계법령, 감독규정 또는 내부정책의 위반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SLT'라 함은 회사의 최고임원협의기구로서 대표이사,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업 및 마케팅(Sales & Marketing) 총괄 부서장, 여신심사관리(Credit Operations & Collections) 총괄 부서장 및 운영(Operations) 총괄 부서장으로 구성된다.

**제4조(내부통제기준의 제 · 개정등)** ① 이 기준의 제 ·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관계법령, 감독규정 또는 내부정책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회사의 대표이사는 SLT의 승인을 받아 회사의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정한다.

## 제 2 장 내부통제

**제6조(내부통제업무단계)** ① 이사회는 내부통제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 방침 및 지시사항을 승인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관계법령, 감독규정 또는 내부정책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적절한 세부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내부통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내부통제에 대하여 이를 확인, 보완, 개선토록 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회사가 영위하려는 부수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준법감시부서를 통하여 관계법령, 감독규정 또는 내부정책이 적절히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에 대한 위반사항을 조사하며, 그러한 점검 및 조사 중에 발견된 문제점과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 ·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계법령, 감독규정 또는 내부정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준법감시인은 회사 임직원의 경직이 관계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위반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관계법령, 감독규정 또는 내부정책 등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내부통제위험의 관리)** ① 회사는 위법 · 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위법 · 부당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는 그 적용범위, 기간 및 빈도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다.
- ② 회사는 내부통제 관련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부정책 "B 5.1 Four-Eyes-Principle Policy"에 따라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함으로써 직무분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③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고객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 감독규정 또는 "IC 0.1 Integrity Code Policy"등의 내부정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 및 의사소통)** 경영진은 주요 경영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된 재무 및 경영 정보 등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임직원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제9조(법규위반사실 은폐금지)** 임직원은 "A 31. 2 Treatment of Violations Policy"등의 내부정책에 따라 본인 또는 동료임직원의 법규위반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비밀유지 등 의무)** 관계법령, 감독규정, "IC 0.1 Integrity Code Policy", "A 21.2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nformation Confidentiality Guideline" 및 "A 17.1 Data Protection Policy"등의 내부정책에 따라,

- ① 회사의 고유정보와 고객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는 비밀로 보호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 ② 비밀정보는 그 기록형태(메모, 서류, 전자화일 등) 및 기록유무 등을 불문하며, 임직원은 자기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타인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비밀정보를 관리, 사용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한 간섭이나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비밀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반정보와 구별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금융거래 비밀보장 등)** ① 임직원은 관계법령, 감독규정 또는 "A 21.2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nformation Confidentiality Guideline"이나 "A 17.1 Data Protection Policy"등의 내부정책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고객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감독규정 또는 "Credit Guidelines and Procedures"등의 내부정책에서 요구되는 한도에서 이를 공정하게 이용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①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임직원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관계법령, 감독규정 또는 "ATCP Vertical Quick Reference Guide" 등의 내부정책에 따라, 고객 및 이해관계 있는 자와의 각종 거래와 관련하여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내부정책 위반시 처리)** 내부통제정책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A 31.2\_8\_Treatment of Violations Policy" 등의 내부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내부고발절차 및 시정조치)** ① 회사는 Business Practices Offices (BPO)와 같은 내부고발절차를 유지하고 내부정책의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조치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내부고발절차를 운영함에 있어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제15조(이해상충의 관리)** 회사의 내부정책 "IC 0.1 Integrity Code Policy"에 따라,

- ① 회사는 합법적인 사유없이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사는 회사와 고객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위험을 파악·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광고 시 준수사항)** ①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리스, 할부금융, 대출과 같은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회사명
  - 2.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
  - 3.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4. 금융상품 체결 전에 고객에게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도록 안내하는 사항
  - 5.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
- ② 회사는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2.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3. 구체적인 증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금융회사의 금융상품보다 우위에 있음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행위
  - 4.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
- ③ 회사는 금융상품 광고 전에 그 광고가 본 조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 등")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관련법에 따른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용
- ②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

- ③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 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직원의 신원사항 등 확인 및 지속적 교육·훈련

### 제 3 장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제18조 (준법감시인의 선·해임)** ① 준법감시인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관계법령, 감독규정 또는 내부정책상 해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하며, 해임시에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임기)**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제20조(권한)** ①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경영진회의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직접 보고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 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독립성 보장)** 회사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2조(준법감시부서)** 회사는 내부통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부통제 점검 또는 조사를 위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준법감시지원부서를 두어야 하며,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1인 이상)으로 지원부서를 구성·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16. 9. 29. 제정)

이 기준은 2016. 10.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16. 개정)

이 기준은 2017. 11. 16. 부터 시행한다.